

신 탁 계 약

JP 모간 월지급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JP 모간 월지급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제 1 장 총칙

제 1 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와 신탁업자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들을 말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5. “투자신탁”이라 함은 JP 모간 월지급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을 말한다.
6. “투자설명서”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7. “증권시장”이라 함은 법 제 9 조 제 13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을 말한다.
8. “법”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9.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를 말한다.
10. “신탁업자”라 함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JP 모간 월지급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
2.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재간접형)이다.
3.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이다.
4.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다.
5.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 제 231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이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이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2. C 클래스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3. C - E 클래스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4. C - F 클래스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부터 제 18 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초 납입금액 100 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5. C - I 클래스 수익증권: 최초 납입금액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 억 이상 100 억 미만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6. C - W 클래스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7. C - S 클래스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이익금 및 현금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2009년 2월 4일에 체결한 ‘투자신탁의 보관·관리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4 조의 2(외화자산의 보관)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신탁업자의 대리인을 해외보관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자산을 제외함)
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 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② 신탁업자는 본조 제 1 항에 따라 선정한 해외보관대리인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신탁업자를 대행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25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 및 이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1,000 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1,000 좌당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당해 종류별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 이익의 분배 및 현금분배금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발행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2. C 클래스 수익증권
3. C - E 클래스 수익증권
4. C - F 클래스 수익증권
5. C - I 클래스 수익증권
6. C - W 클래스 수익증권
7. C - S 클래스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 3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 310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 1 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 좌권, 10,000 좌권, 100,000 좌권, 1,000,000 좌권, 10,000,000 좌권, 100,000,000 좌권, 1,000,000,000 좌권의 7 종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발행될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 재교부가 청구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본 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증권이 집합투자업자에 교부되지 않으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현금분배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익증권 전체 또는 종류별로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와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 10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 3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기준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5. 월 현금분배금(또는 다른 정기 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2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 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흥시장 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보증하거나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신흥시장 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보증하거나 발행한 채권(“이머징 마켓 국공채”)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이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2.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이하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3.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위의 이머징 마켓 국공채와 주식을 제외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이하 “기타 집합투자증권”)
4.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중 국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하 “국내주식”)
5.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 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해외주식”)
 6.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이하 “파생결합증권”)
 7.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채권” 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해외채권”).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10.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이하 “어음”)
 11.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해외어음”)
 12.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 5 조 제 2 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
 13.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
 14.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5.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6. 증권의 차입
 17.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8.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19. 법 제 83 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및 기타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3.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4.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채권 및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어음 및 해외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1.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2. 단기대출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하로 한다.

13. 제 17 조 제 19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6 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 6 호의 2 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6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각 투자할 수 있다.

다.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3.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3 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 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 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이 정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금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11.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제 18 조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 제 12 호 및 제 19 조 제 1 호 가목 및 나목, 제 3 호, 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 및 제 19 조 제 1 호,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 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에 따른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1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제 3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2 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3 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법 제 247 조 제 5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 4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

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한다.

제 25 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30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6 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제 10 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9 영업일)(당일포함)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자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27 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4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 영업일)(당일 포함)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

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 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1 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 28 조의 2(환매연기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① 제 28 조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28 조에 따른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제 30 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9 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1,000 좌당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1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최초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처음으로 도래하는 6 월 30 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의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해당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분배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 33 조의 2(현금분배금) 집합투자업자는 매 1 개월 단위(분배시기 및 주기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할 수 있음)로 법 제 242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자산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의 운용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이익을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음).

1. 분배금: 분배금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기준으로 본다 (이하 “분배기준일”).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당일포함)부터 제 5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하 “분배금 지급일”).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재량 하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 3 (분배금의 지급연기 또는 지급중단) ①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다음의 내용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2.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자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자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총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②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분배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기에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의 100%까지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에 통보함으로써 분배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③ 분배금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을 재개할지 여부를 통지하고 지급을 재개하기로 통지한 경우 분배금을 지급한다. 다만, 분배금 지급연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배금은 지급재개 후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 34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마지막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9 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 10 조 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6 조(이익분배금, 현금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현금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3 조부터 제 35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현금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6 장 수익자총회

- 제 37 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②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상법 제 36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 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직접 또는 대리 불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 6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하고(대리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에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 제 39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은 **매 3 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2. C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3. C - 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4. C - F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5. C - I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6. C - W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7. C - S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제 40 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1,000 좌당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8% 이내
2. C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3. C - E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4. C - F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5. C - I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6. C - W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7. C - S 클래스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③ 제 2 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 2 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 2 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1 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비용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과 같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④ 제 2 항 제 10 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 pocket expenses)

제 8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 조 제 6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4 조 제 2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 제 4 항, 법 제 246 조 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③ 이 투자신탁이 제 1 항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제 41 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 49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 46 조(투자신탁 해지시 미지급금 등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 7-11 조 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9 장 보칙

제 47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 2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90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⑨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 239 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제 50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51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52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3 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본 신탁계약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2013.08.)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등록의 완료 및/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집합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35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투자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신탁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업자	대표이사 차승훈	업자	증권관리부서장